

-2026년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비R&D 지원사업-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맞춤형 기술지원 참여기업 모집 3차 통합 공고

-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산업·기술 생태계 활성화 및 친환경·고성능 이차전지 소재의 글로벌 허브구축을 위한 「2026년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비R&D 지원사업」의 맞춤형 기술지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7월 16일

전북특별자치도지사
(재)전북테크노파크원장
원투자파트너스

1 개요

- 공 고 명 : 2026년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맞춤형 기술지원 참여기업 모집 3차 통합 공고
- 지원목적 :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산업·기술 생태계 활성화 및 친환경·고성능 이차전지 소재의 글로벌 허브구축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(시제품 제작, 제품고급화, 기술가치평가, 애로기술 컨설팅, 장비활용, 인증, 특허, 투자유치역량강화, IR고도화)을 추진하고자 함
-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 ~ 약 3개월
- 접수기간 : 공고일 ~ 2026. 7. 31.(금) 17:00까지
-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장을 둔 **이차전지 소재, 재활용, 재사용 전후방 기업**
※ 우대사항: 이차전지 음극소재, LFP 재활용 관련 매출 등 증빙 가능 시
- 지원규모 : 기업당 최대 45백만원 이내, 28건 내외
- 지원방식
 - 전북TP : 수혜기업-공급기업-전담기관(TP) 간 3자 협약 체결을 통한 지원 방식
 - 원투자파트너스 : 전담기관(원투자파트너스)-공급기관(VC·AC Pool) 간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간접 지원(서비스 매칭) 방식

2 지원내용

○ 지원항목 구성: 최대 3개 항목까지 신청 가능

- 지원유형 I, II, III ⇨ 1개 항목 단독지원 가능(O)
- 지원유형 I + 지원유형II + 지원유형III ⇨ 중복지원 가능(O)
- 지원유형II + 지원유형II(또는 III)) ⇨ 중복지원 가능(O)

○ 세부지원내용

구분	지원항목	지원내용	건수	지원규모	
지원유형 I	제품 고급화	- 기존 제품의 기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공정 개선 및 설비 고도화를 통한 품질 안정화 지원	3건 내외	최대 30백만원/건	전북 TP
지원유형 II	기술 가치평가	- 기업 보유 기술의 기술성, 권리성, 시장성, 사업성 등 종합 분석 - 기술가치 금액 산정 및 평가보고서 제공	2건 내외	최대 10백만원/건	
	애로기술 컨설팅	- 기업 보유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기술진단 -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맞춤형 기술 자문 지원	6건 내외	최대 3백만원/건	
	장비 활용	- 소재 분석, 시험평가, 신뢰성 분석 등 연구개발 장비 활용 지원 ※ 전북테크노파크 외 장비 사용 必	3건 내외	최대 5백만원/건	
	인증	- 이차전지 관련 KC, KS, IEC 등 국내 인증 획득 지원 - 사용후 배터리(재사용·재활용) 관련 인증 지원 ※ 시험평가, 인증취득 비용 지원	3건 내외	최대 5백만원/건	
	특허	- (컨설팅) 출원 전략 수립 및 특허 등록 절차 자문 컨설팅 - (출원비용) 특허 출원 관련 수수료 및 대리인 비용 지원 ※ 관납료 제외	1건 내외	최대 3백만원/건	
지원유형 III	투자역량 강화컨설팅	- BM강화 및 시장·경쟁조사 기반 비교우위 도출 지원 - 기업가치 및 투자조건 등 전사적 투자지원전략 지원	5개사 내외	최대 5백만원/건	원투자 파트너스
	IR 고도화	- 체계적 투자유치를 위한 맞춤형 Mile-stone 수립 지원 - IR 고도화 지원	5개사 내외	최대 5백만원/건	

※ [참고] 기업지원 프로그램별 상세 내용은 [첨부1] 신청서 서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지원유형III은 원투자파트너스에서 평가 진행

○ 유의사항

- 공공재정환수법 :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장 제9조(2024.3.26.)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, 보상금,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(이하 “공공재정지급금”이라 함)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됨
- 누구든지 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사용,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
※ 본 사업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준수하오니 사업 신청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각 프로그램은 해당 수행기관으로 접수되며, 기업당 최대 2개 항목의 중복 지원/선정이 가능(지원항목 구성 확인)
- 단,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1개 항목만 선정될 수 있음
- 지원금은 기업이 수행한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,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검토·확인된 후에 지급됨
- 각 지원 항목별 지원 규모는 평가결과, 원가분석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전북테크노파크는 **부가세(VAT)가 지원되지 않음**
- 본 사업은 공급기업(기관) 매칭을 통해 지원되므로, 공급기관 등록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
- **공급기업과 수혜기업 동시에 지원 불가능**(공급기업이 수혜기업으로 선정 시, 당해 연도 공급기업으로 사업 참여 불가)

○ 지원제외 대상

-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
- 국세(지방세) 체납처분, 채무불이행자, 파산·회생기업, 자본전액잠식, 국가R&D 참여제한 기업(대표자) 등
- 단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 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참여 가능
- 신청 사업이 (재)전북테크노파크 및 타 기관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인 경우
-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협약 체결 및 공급기업 등록 기준

- 지원유형 I, II,는 수혜기업-공급기업-주관기관 간 3자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
- 지원유형III은 공급기업-주관기관(원투자파트너스) 간 용역 위탁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
- 공급기업은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
 -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비R&D 사업 공급기업 등록 완료 기업
 - ↳ 신청서 제출 시 공급기업 등록 서류 제출(관련 서류 별도 제출)
- 미등록 기업의 경우, 협약 체결 전까지 공급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, 등록 미완료 시 협약 체결이 제한될 수 있음
- 지원유형III은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VC(창업투자회사) 및 AC(창업기획자) Pool에서 수혜기업 매칭 후 주관기관이 직접 지정 및 계약 진행

3 추진 절차 및 일정

○ 추진 절차 및 일정

추진내용	세부내용	추진일정
사업공고	공고 및 접수	'26. 7. 31.(금) 까지
↓		
서류평가	평가 결과(이메일 개별 통보)	'26. 8. 6.(목)
↓		
대면평가, 서면평가	대면평가(기업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), 서면평가(발표 없이 계획서 내용 평가) 평가 결과(이메일 개별 통보)	'26. 8. 12.(수) '26. 8. 13.(목)~14.(금)
↓		
사업계획서 수정	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정 및 원가분석	'26. 8월 중
↓		
협약체결	협약체결	'26. 8. 24.
↓		
사업수행	사업 수행	'26. 8월 ~ 11월
↓		
중간/최종점검	중간 또는 최종점검	'26. 9월~10월
↓		
결과보고서 제출	결과보고서 제출 및 현장실사	'26. 11월 중
↓		
지원금 지급	최종평가 후 지원금 지급	'26. 11월 중
↓		
만족도 조사	지원 만족도 및 성과활용 조사	'26. 11월 중

※ 상기일정 및 평가방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※ 원가분석, 중간/최종점검, 현장실사는 시제품 제작/제품 고급화만 해당

※ 만족도조사는 제품고급화, 기술가치평가, 애로기술컨설팅, 장비활용, 인증, 특허만 해당

4 평가기준

○ 평가방법

- 서류평가 : 신청서 및 제출 서류 기반 기업별 적격여부 진행
 - 제품고급화, 기술가치평가, 애로기술컨설팅, 장비활용, 인증, 특허, 투자역량강화 컨설팅, IR고도화
- 서면평가 : 신청서 기반 서면 평가 진행(평가 위원 5인 구성)
 - 기술가치평가, 애로기술컨설팅, 장비활용, 인증, 특허, 투자역량강화 컨설팅, IR고도화
- 대면평가 : 신청서 및 PPT 기반 기업별 발표 평가 진행(평가 위원 5인 구성)
 - 제품고급화 ※ 기업당 총 15분(발표 10분 내외, 질의응답 5분 내외)
- 선정기준 : 제출된 서류의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
- 결과발표 : 선정기업 개별 통보

○ 평가기준 및 방법

- 평가위원 점수의 합산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
- 지원 필요성, 사업계획서 적정성, 실현가능성, 파급효과 등 항목 평가
- 평가 과정에서 지원사업비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구분		평가지표	배점
서류평가		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	적격여부
		국세·지방세 등 미체납	
		사업 지원 제외 대상 여부 확인	
서면평가, 대면평가,	지원의 필요성	목표의 명확성	20점
		추진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타당성	
	지원내용의 적성성	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략방향의 적정성	30점
		사업의 시급성 및 실현가능성	
		기술적·사업적 실행 및 성과 창출 가능성	
	사업성	시장규모, 수익성(투자효과), 시장진입·확대 가능성	30점
		제품 및 기타 개발전략(사업화전략)의 적정성	
		기존 기술·제품 대비 차별성 및 경쟁력	
	기대효과	제품의 생산성 및 매출 향성 가능성	20점
		제품을 통한 고용창출 증대 가능성	

5 신청 및 접수 방법

- 접수기간 : 2026. 7. 16.(목) ~ 7. 31.(금) 17:00까지
-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 (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)
 - 온라인 접수 : <http://rnd.jbtp.or.kr> (전북R&D종합정보시스템)

• 사업(과제)신청방법

- 제출방법: [지원사업공고/신청] 확인하여 해당사업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
 - * 홈페이지 가입 및 사용 매뉴얼 참고
 - * 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자 수가 많을 경우 시스템 활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사업 접수기간 종료 후 과제 등록은 불가하오니 유의 바랍니다.

○ 제출서류

연 번	제출서류	지원유형 Ⅰ	지원유형 Ⅱ	지원유형 Ⅲ
1	(붙임1)[서식1]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	필수	필수	필수
2	(붙임1)[서식2]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필수	필수	필수
3	(붙임1)[서식3] 중복지원 금지 서약서	필수	필수	필수
4	(붙임1)[서식4] 청렴서약서	필수	필수	필수
5	사업자등록증(종된 사업장명세(증명) 포함)	필수	필수	해당시
	공장등록증	해당시	해당시	해당시
6	국세 납세증명서 (국세청 홈택스, 공고일 이후 발급)	필수	필수	해당시
7	지방세 납세증명서 (정부24, 공고일 이후 발급)	필수	필수	해당시
8	(붙임2)공급기업 신청서	해당시	해당시	-
9	견적서, 비교견적서	필수	필수	-
10	재무제표(최근 3년)	필수	필수	-
11	증빙 서류	(붙임1)[서식5] 전문가 프로필	컨설팅	-
		출원 입증서류, 출원서, 명세서, 관납료 납부 영수증	특허(출원비용)	-
		특허명세서(보유 시)	기술가치평가	-

※ 신청서 및 제출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
6 공급기업 Pool 요청 및 문의처

☐ 전북테크노파크

○ 문의처 : (재)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사업단 이차전지반도체진흥팀

○ 담당자 : 배은지 연구원(063-260-9366, baeeunji04@jbtp.or.kr)

○ 주소 :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24(둔산리 864-9)

※ 공급기업 리스트가 필요하신 경우 전북테크노파크로 연락부탁드립니다.

☐ 원투자파트너스

○ 문의처 : 원투자파트너스(주) (투자유치 역량 강화)

○ 담당자 : 최병정 실장(063-213-2289, megacbj@gmail.com)

○ 주소 :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, 1동 301호

7 사업비 산정 방법

☐ 전북테크노파크 (지원유형 I, II)

○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최대 20% 이상 부담(부가세 별도)

(단위 : 천원)

지원분야	TP 지원금(80%)	기업부담금(20%)	합계
제품고도화	30,000	7,500	37,500
기술가치평가	10,000	2,500	12,500
장비활용, 인증	5,000	1,250	6,250
컨설팅	3,000	750	3,750

☐ 원투자파트너스 (지원유형 III)

○ 지원유형 III은 수혜기업에게 직접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는 '간접 지원(서비스 제공)' 사업임

○ 선정된 기업은 자부담금 없이 IR 고도화 및 투자역량강화 컨설팅 서비스를 직접 수혜

○ 지원유형 III의 지원금은 수혜기업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, 공급기관(VC·AC)의 과업 완료 보고서 검수 후 수행기관에서 공급기관으로 직접 용역비가 지급됨